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6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 유준병 • 박용갑 • 한병도

박희승 • 박민규 • 문대림

조계원 • 박홍배 • 정동영

김교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·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,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 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 았음.

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「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」에서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는 재난문자방송의 기준으로서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, 자연·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,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,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재난 등에 관한 예보·경보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·사변 또는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이에 관한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2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의 제목 중 "예보"를 "및 국가비상사태 예보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사람의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또는 사고 및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사람의"로, "및 재산에"를 "·재산 및 안전에"로, "그"를 "이를 알리거나 그"로, "예방하거나"를 "예방 또는"으로, "재난"을 "재난 및 국가비상사태(이하 "재난 등"이라 한다)"로, "운영할 수 있다"를 "운영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재난에"를 "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"로, "재난과"를 "재난 등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"재난에"를 "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"로, "필요하면"을 "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"로, "요청할 수 있다"를 "요청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"재난에"를 "재난 등에"로 하며, 같은 중 "재난의"를 "재난 등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재난의"를 "재난 등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재난의"를 "재난 등에"로 하다.

- 1.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
- 2.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

3.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 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 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각종 사고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8조의2(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제38조의2(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구축·운영 등) ① 재난관리책 예보・경보체계 구축・운영 등) ① -----다음 각 호의 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・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또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 는 사고 및 국가비상사태로 인 하여 사람의-----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----· 재산 및 안전에-----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・ 운영할 수 있다. -이를 알리거나 그----예방 <u>또는</u>-----<u>재난 및 국</u> 가비상사태(이하 "재난 등"이라 한다)-----운영하여야 한다. 1.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<신 설> <신 설> 2.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 포와 그 해제 3.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<신 설>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 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 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각종 사고

-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 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 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 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재</u> 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~ 5. (생 략)
- ④ 제3항에 따른 <u>재난에</u>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 보·경보·통지를 실시한다.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1. ~ 3. (생략)
- ⑤ (생 략)

2
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
<u>과</u>
난 등과
③
<u>제1</u>
항에 따른 재난 등에
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
따라
요청하여야 한다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<u>재난 등에</u>
·
·

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,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·경보 실시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
(6)
재난 등의
⑦ ~ ⑫ (현행과 같음)